

【1】 제32회의회(臨時會) 회기결정의건

제의년월일 : 1995. 1. 21

제 의 자 : 의 장

제안이유

제32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 위함임.

주요골자

회기 : 1995. 1. 21 ~ 1. 27 (7일간)

【2】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5. 1. .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 지역자율방재체제구축을 위한 내실있는 수방단으로 재 정비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방재조직으로 육성
- 『사전계획대피제』 등 신 재해대책을 실천할 수 있는 수방단으로 재편성코자 함.

주요골자

가.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편성하되 필요 최소 인원으로 편성.

(안 제2조 제3항)

나. 1개의 수방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단원 2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

(안 제4조 제1항)

다. 매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사이에 편리한 날짜를 택하여 1회이상 수방단에 대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 (안 제6조 제1항)